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변경 공고(2차)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위원장

I.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시험의 공고) 제3항

II. 변경 내용

- 제4회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변경사항

직급	직렬	직류	선발예정인원			
			변경 전		변경 후	
			계	임용기관	계	임용기관
7급	행정	일반행정	5	전북도 3, 전주 2	17	전북도 15, 전주 2

III. 기타 사항

-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변경 공고는 “전북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10호(2025.2.14.)”에 게재된 시험일정, 방법, 응시자격 등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그 밖의 기타 세부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총무과(공무원채용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63) 280-2266

[붙임 2]

※ 본 안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예측가능성 및 편의를 위하여 사전안내하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의 관련 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에 의합니다.)

반드시 안내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수험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귀책사유입니다.)

2025년~2027년 달라지는 시험제도

2. 2026년부터 달라지는 시험제도

2026년부터 적용

마. [추가 안내] 연구·지도직 직류 명칭 변경 및 시험과목 개편

○ 농촌지도 직류 명칭 변경

- ‘농업’ → ‘작물’, ‘잠업’ → ‘산업곤충’, ‘농업기계’ → ‘농업공학’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별표 1]

○ 농업공학(변경 전 농업기계) 시험과목 개편

변경 전	변경 후
물리학개론, 농업동력학, 농촌지도론	물리학개론, 농업기계학, 농촌지도론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3. 2027년부터 달라지는 시험제도

2027년부터 적용

라. [추가 안내] 7·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과목 개편

○ 7급 공채 시험과목 개편(「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

변경 전	변경 후
필수: 국어(한문포함), 영어 대체, 한국사 대체,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 개발론 중 1과목	1차: 공직적격성평가(PSAT), 영어 대체, 한국사 대체 2차: (필수)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 개발론 중 1과목

※ 3차 시험(면접) 불합격한 사람이 시험에 재응시하는 경우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4조)

○ 9급 공채 시험과목 개편(「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

변경 전	변경 후
(공통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공통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대체

- (최종합격자 결정) 한국사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의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자를 결정하되, 해당 총득점이 동일한 경우 제2차 시험에 해당하는 과목의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

마. [추가 안내] 8·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출제 문항수 변경

변경 전	⇒	변경 후
과목 당 20문항(총 100문항)		과목 당 25문항(총 100문항)

※ 인사혁신처 2027년도 9급 공채 시험 개편(안)

바. [추가 안내] 취업지원 대상자 변경(추가)

○ 취업지원 대상자

- (변경 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 (변경 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생존장병